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526174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7. 11. 28.

판결 선고 2017. 12.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00,968원 및 그 중 108,827,408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58,395,8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58,395,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5. 8.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운전일반자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을 108,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따른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손해금의 비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 3)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15. 8. 4. 위 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4) 피고 회사는 2016. 8. 3.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108,827,408원(= 원금 108,000,000원 + 이자 827,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184,630원이고,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488,93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6. 1. 18.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2016. 3. 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6. 3. 29. 한빛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09,500,968원(= 원고의 대위변제금 108,827,408원 + 추가보증료 184,630원 + 법적절차비용 488,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의 최종송달일인 2016. 12.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범위인 58,395,8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58,39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5. 8. 4. 피고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2016. 1. 18.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6. 7. 10. 대출금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2016. 10. 20.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추단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다 제1호증의 2, 3, 4, 을다 제2호증의 1, 2, 3, 4, 을다 제3호증의 1, 2, 3, 4, 을다 제5, 6, 7,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청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그의 채무관계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수요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이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매매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시기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시기 사이에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기존 임차인의 임차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거래 조건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은 다니던 교회(대전 E교회) 인근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던 중, 지인인 F의 소개로 피고 B이 위 교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5. 12. 23.경 선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의 남편인 J는 2016. 1. 18. 피고 B의 아버지인 G을 만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 피고 B의 채무상태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기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76,033,920원이었으나,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포함하여 51,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피고 C과 피고 B은 위 매매대금을 48,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④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2016. 1. 20.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0,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00,000원은 피고 C의 시어머니인 K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었다.

⑤ 피고 C은 2016. 3. 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8,500,000원은 아버지인 H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의 임차인인 I이 2016. 11.경 퇴거하자 남편 J의 외숙모인 L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2016. 11. 10. 위 I에게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⑥ 피고 C은 2016. 11. 23. 남편 J, 두 자녀와 함께 위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은기

별지